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교원보수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마련 〉

■ 정성국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247호)

2025. 6.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교원보수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마련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정성국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2025. 3. 21.
3. 회부연월일: 2025. 3.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공무원의 보수조정 등 논의를 위해 인사혁신처에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교육공무원인 교원 참여는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음. 100만 공무원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교원의 참여를 배제한 보수정책 논의 구조의 변경이 필요한 상황임.

특히 교원지위법상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결정과정에 교원이 전혀 관여하지 못하고 있어, 교원 업무의 급격한 증가에도 적절한 보상기제가 마련되지 못하고, 교육공무원이 승진하여도 보수체계의 변동이 전혀 없는 구조로 타 직렬 공무원에 비해 처우개선이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교직의 특수성에 맞게 보수·처우개선을 논의할 수 있도록 ‘교원보수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 교원보수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마련

개정안은 교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교직의 특수성에 맞는 보수·처우개선을 논의할 수 있는 ‘교원보수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3조의2(교원보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국가는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원의 보수에 대한 우대조치 등 교원의 처우 및 보수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보수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u> <u>② 교원보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u> <u>1. 교원 처우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u> <u>2. 교원 보수수준의 조정에 관한 사항</u> <u>3. 기타 교원 보수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u> <u>③ 교원보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u>

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한다.

1. 보수정책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명 이내

2. 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이내

3. 교원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5명 이내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⑤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의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이행결과를 교원보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원보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국·공립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에 해당되므로,¹⁾ 보수에 관한 사항은 「교육공무원법」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무원수당규정”이라 함)」 등이 적용됨.²⁾

사립학교 교원의 보수는 원칙적으로 교원과 임용권자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³⁾ 사이의 구체적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되나,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함)」은 제3조제2항에서 사립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⁵⁾ 교육공무원

1) 「교육공무원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③ 이 법에서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2. 제39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
3. 교육 관계 법령이나 교육 관계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

2) 「교육공무원법」

제34조(보수결정의 원칙) ②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자격, 경력,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무원보수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교육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무원인사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1조(수당의 지급)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그 밖에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무원수당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48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① 각급 학교의 교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
2.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임용

4)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비고 본문 등 위헌확인(헌법재판소, 2020헌마1158, 2023.7.20.)

5) 「교원지위법」

제3조(교원 보수의 우대) ②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의 보수 수준에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음.

이와 같이 교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등에 규정되거나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정해지고 있으나, 「교육기본법」, 「교원지위법」, 「교육공무원법」 등은 교원의 경제적 지위, 보수 등에 대한 우대를 규정하고 있고,⁶⁾ 2023년 기준 국가공무원 76만 8천여명 중 교육공무원은 36만 9천여명으로 48%에 해당하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⁷⁾ 교원의 특수성에 맞는 보수·처우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교직의 특수성에 맞는 보수와 처우개선을 논의할 수 있는 ‘교원보수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사립학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3. “사립학교경영자”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이 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학교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한다.

6) 「교육기본법」

제14조(교원) ① 학교교육에서 교원(敎員)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교원지위법」

제3조(교원 보수의 우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

「교육공무원법」

제34조(보수결정의 원칙) ①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어야 한다.

7) 국가공무원 직종별 현원

(단위: 명, %)

구분	정무직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	합계
			외무	경찰	소방	검사	교육	소계		
현원	125	181,420	2,199	146,044	66,216	2,116	369,504	586,079	443	768,067
비율	0.02	23.62	0.29	19.01	8.62	0.28	48.11	76.31	0.06	100.00

주: 2023년 기준

자료: 인사혁신처, 「2024 인사혁신통계연보」, 2024.6.

개정안에 따라 교원보수위원회가 설치·운영될 경우, 교원을 중심으로 보수와 처우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와 정책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법률 개정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교원보수위원회 신설과 관련하여,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교원보수위원회에서 교원의 보수와 처우개선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령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공무원보수위원회, 수당조정심의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먼저, 공무원보수위원회는 공무원 보수정책의 수립과 처우 및 보수제도의 개선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것으로, 심의사항에 공무원 처우개선계획 수립, 공무원 보수수준의 조정, 공무원의 종류·직군 등 간 보수균형, 공무원 보수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이 포함되며,⁸⁾ 공무원에는 교원도 해당됨.

8)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

제1조 (설치) 공무원 보수정책의 수립과 공무원 처우 및 보수제도의 개선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무원 처우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 보수수준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공무원의 종류·직군 등 간의 보수균형에 관한 사항
4. 기타 공무원 보수제도의 합리적 개선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보수정책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5명 이내

다음으로, 수당조정심의회는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른 수당 중 조정이 필요한 사항(지급액, 지급범위, 지급방법 등)을 반영한 수당조정 요구서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부처에 설치된 것으로,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 등 각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당조정 요구서를 작성하고 수당조정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를 인사혁신처에 제출하는데, 수당조정 요구서에는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교직수당 등의 내용이 포함됨.

현행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해당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된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⁹⁾

개정안에 따라 교원의 보수에 대한 우대조치 등 교원의 처우 및 보수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심의하는 교원보수위원회와 현행법령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공무원보수위원회, 수당조정심의회 간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무원의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인사혁신처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 이내

3. 노동·임금정책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인사혁신처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 이내

③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위촉한다.

* 2025년 4월 기준 공무원보수위원회 위원은 보수정책 관련 공무원 5명(교육부 교원학부모지원관 1명 포함), 노동조합 추천자 5명, 노동·임금정책 등 관련 전문가 5명(대학교수 1명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음

9)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둘째, 교원보수위원회의 설치·운영 주체, 구성 등 세부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제3조의2제1항에서 교원보수위원회를 ‘국가’가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주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개정안은 같은 조 제3항제3호에서 ‘교원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5명 이내’의 사람을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항 제2호와 유사하게 ‘교원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명 이내’ 등으로 위촉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정안은 같은 조 제5항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심의결과의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이행결과를 교원보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의결과를 이행하는 방식, 절차 등에 대해 인사혁신처와 협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아울러, 개정안은 같은 조 제6항에서 교원보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법률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 법률 및 대통령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은 부령 등으로 정하되, 전문적·기술적 사항 또는 경미한 사항으로 구체적 범위를 정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고시·훈령·지침 등으로 정하는 점을 고려할 때,¹⁰⁾ 위원회 관련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위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표 1] 보수위원회 관련 비교

구분	교원지위법 개정안(법률)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인사혁신처 훈령)
설치	제3조의2(교원보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국가는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원의 보수에 대한 우대조치 등 교원의 처우 및 보수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u>교원보수위원회</u> 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제1조 (설치) 공무원 보수정책의 수립과 공무원 처우 및 보수제도의 개선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u>공무원보수위원회</u>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 사항	② 교원보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u>교원</u> 처우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u>교원</u> 보수수준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u>교원</u> 보수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u>공무원</u> 처우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u>공무원</u> 보수수준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공무원의 종류·직군 등 간의 보수균형에 관한 사항 4. 기타 <u>공무원</u> 보수제도의 합리적 개선에 관한 사항
구성	③ 교원보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u>10명 이내</u> 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한다. 1. 보수정책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명 이내 2. 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u>교육부장관</u> 이 위촉하는 사람 2명 이내 3. <u>교원단체</u> 등에서 추천하는 5명 이내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u>15명 이내</u>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보수정책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5명 이내 2. 「 <u>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u> 」에 의한 공무원의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u>인사혁신처장</u> 이 위촉하는 사람 5명 이내 3. 노동·임금정책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u>인사혁신처장</u> 이 위촉하는 사람 5명 이내 ③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u>인사혁신처장</u> 이 위촉한다.
임기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u>1년</u> 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u>정부 소속 공무원</u>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u>1년</u> 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u>정부 소속 공무원</u>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결과 처리	⑤ <u>인사혁신처장</u> 은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의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이행결과를 <u>교원보수위원회</u> 에 보고하여야 한다.	-
위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u>교원보수위원회</u>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u>교육부장관</u> 이 정한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위원회와 소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u>위원회의 의결</u> 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0) 국회사무처, 「법제기준과 실제」, 2024.5., pp.34~35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 등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 교육부: 일부수정 -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교원 보수수준의 조정 및 교원 보수제도 개선 등 추진 필요성에 공감함. - 다만, 교육공무원 신분인 교원의 보수는 주무부처(인사처)가 공무원 보수결정의 원칙* 등에 따라 타 공무원 보수와의 균형, 민간의 임금수준,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 공무원의 보수체계 내에서 논의 및 결정하는 점을 고려하여, * 「국가공무원법」 제46조(보수 결정의 원칙) ②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물가 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 부문의 임금 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경력직공무원 간의 보수 및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간의 보수는 균형을 도모하여야 한다. - 이와 별개의 위원회를 설치하기 보다는 기존의 논의체계(인사혁신처에 설치된 공무원보수위원회)를 통해 교원의 처우 및 보수정책이 실질적으로 심의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수정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 제3조의2(교원보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국가는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원의 보수에 대한 우대조치 등 교원의 처우 및 보수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보수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수정안 제3조의2(교원의 처우 및 보수정책 심의) 국가는 「국가공무원법」 제46조에 따른 보수 결정 시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원의 보수에 대한 우대조치 등 교원의 처우 및 보수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일부수정 - 교원보수위원회 위원의 연임 가능 여부 및 횟수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청: 일부수정 - 현장 의견 반영 강화 등을 위해 교원보수위원회 구성인원을 13~15명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행정안전부: 신중검토 -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관위원회법」을 고려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기보다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는,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교원 관련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구성을 다양화하는 등의 방안 등에 대해 위원회 운영 주관부처인 인사혁신처와 협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인사혁신처: 신중검토 - 현재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교원을 포함한 전체 공무원의 보수조정 등을 심의하고 있으므로, 교원보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할 경우 위원회 간 기능 중복 발생 및 논의 과정의 비효율을 초래함. - 현행과 같이 공무원보수위원회에 참여하는 교육부 위원이 교원노조와의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는 방식이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됨.	

문 의 처

02)6788-5189